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2 - 49호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군포시의회 의장

군포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4일

군포시의회 의장



군포시의회 규칙 제36호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특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매년”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발의한다”를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2항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의4(위원회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연설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설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설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설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u>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u>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u>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
제8조의2(의장의 겸직 제한) ① <u>의장은 부의장, 특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u> ② (생략)	제8조의2(의장의 겸직 제한) ① ----- <u>부의장, 위원장-----</u>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 ① <u>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연간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u>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경우 해당연도 연간 기본일정을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18조(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 ① -----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u>

③ (생략)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삭 제>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22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위원회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
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
출자가 된다.

<신 설>

제57조의2(연설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설회
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
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설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
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
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연설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
회의 회의로 한다.